

구분	주요 내용	조문 (일몰기한)
⑧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▪ (대상) 인구감소지역 및 <u>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 지역</u> 소재 주택 ▪ (감면내용) 취득세 25%(+조례 25%) 감면* * 감면한도 : 범 75만원 + 조례 75만원 	제75조의5 제4항 (2028.12.31.)
⑨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감면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기업 사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▪ (대상)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85㎡이하 공동주택 (다가구 포함) 및 기숙사 ▪ (감면내용) 취득세 50%(+조례 25%) 	제75조의5 제7항 (2028.12.31.)
⑩ 빙집 정비를 위한 감면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빙집 관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빙집 정비 촉진 ▪ (대상) 빙집 철거 토지 및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·건축물 ▪ (감면내용)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50% 감면(5년), 취득세 25%(+조례 25%) 감면* * 감면한도 : 범 75만원 + 조례 75만원 	제75조의6 (2028.12.31.)
⑪ 마을회 소유 선박에 대한 감면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소외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▪ (대상) 마을회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선박 ▪ (감면내용) 취득세 100% + <u>재산세100%, 지역자원 시설세 100%</u>, 	제90조 (2028.12.31.)
⑫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 등 ▪ (대상) 인구감소지역에 본·지점 등이 소재하는 법인 ▪ (요건) 인구감소지역 주민*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 * 고용시점에 해당 기업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사람 ▪ (감면내용) 근로자 1인당 45만원(중소 70만원)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	제167조의5 (2028.12.31.)
⑬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목적) 주식시장 활성화 등 ▪ (대상)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한 경우 ▪ (감면내용) 소득세율의 100분의 10 적용 	제167조의6 (2028.12.31.)